의안번호	제 201 호
의 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#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허창원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##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# (허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1 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허창원, 전원표, 송미애,

연철흠, 이옥규, 정상교,

박문희

#### 1. 제정 이유

○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 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.

#### 2. 주요 내용

- O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O 대행기관의 회의소집, 운영 지원, 기능수행사무 등을 규정함 (안 제3조, 제4조)
- O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된 행 정적 지원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O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한 포상규정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,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민관협력공동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라. 입법예고 : 2019. 5. 13. ~ 2019. 5. 23.(10일간)

##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지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"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"통일자문회의"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말한다.
- 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 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
  - 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충청북도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 한다) 운영 지원
  - 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4.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운

- 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.
- 제4조(인력 등 지원)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공공시설의 이용)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 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6조(포상) 도지사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- 제9조(사무기구)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사무처장 은 정무직으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10. 5. 20.>
-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워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,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1.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
  - 2.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
  - 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 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 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 다. <개정 2013. 5. 22.>
-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 장이 주재한다. 다만,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.
-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1.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
  - 2. 지역회의의 조직·운영
  - 3.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

- 제3조(대행기관 등)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.
-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  - 2.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 에 관한 사무
  - 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(이하 "사무처장"이라한다)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,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 <개정 2013. 8. 13.>
  - 1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 지역의 지도급 인 사 :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
  - 2. 이북5도 대표 : 이북5도지사
  - 3. 재외동포 대표 :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
  - 4.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: 주무관청 의 장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- 제25조(구성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 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 회의를 둘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 장이 회의를 주재한다. <개정 2013. 8. 13.>
-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,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, 월남자(越南者)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,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.

제25조의2(기능 등)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
- 2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
- 3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
- 4.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-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다.
- ③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·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# ○ 사 유

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